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10. 26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정 및 근거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등(안 제7조제1항)

- 1) 주택사업, 토지개발사업의 사업내용 구체적 명시
- 2)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현행법에 맞게 조정
- 3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상의 사업추가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사업내용 명확화
- 4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·「주거기본법」·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·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·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 마련
- 5) 다른 법률 사업 시행근거와 위탁사업 범위의 명확화

나.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,제3항)

다. 공사의 재산 무상사용 규정 삭제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17. 9. 20. ~ 2017. 10. 10.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이상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“사업”을 “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취득, 개량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
2. 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
3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
제7조제1항제10호를 같은 항 제15호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15.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11. 「주거기본법」에 따른 사업
1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장정비사업
13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14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

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-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(“물품”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“무상사용수익”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)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<u>사업</u> 을 시행한다.	제7조(사업) ①----- ----- <u>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.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상의 주택사업	1. <u>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취득, 개량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u>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상의 토지개발사업	2. <u>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u>

현행	개정안
<p>3. <u>토지구획정리사업</u></p> <p>4.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<u>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</u></p> <p>7. ~ 9. (생략)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10. <u>기타 공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 <p>제20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("물품"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"무상사용수익"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</p>	<p>3. 「<u>도시개발법</u>」에 따른 <u>도시개발사업</u></p> <p>4.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」에 따른 <u>정비사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</u>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<u>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<u>도시재생사업</u> (현행 제10호는 제15호로 이동)</p> <p>11. 「<u>주거기본법</u>」에 따른 <u>사업</u></p> <p>12. 「<u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에 따른 <u>시장정비사업</u></p> <p>13. 「<u>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역세권개발사업</u></p> <p>14. 「<u>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스마트도시건설사업</u></p> <p>1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<u>사업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</u></p> <p>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</p> <p>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20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("물품"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"무상사용수익"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</p>

관 계 법 령

[지방공기업법]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- 7. 주택사업
- 8. 토지개발사업

제49조(설립)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[도시개발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도시개발사업"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.

부 칙

제6조(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5904호) 제9조·제10조·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을,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5904호)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「도시계획법」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「도시개발법」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.

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2. "정비사업"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: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,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)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.

- 가. 주거환경개선사업 :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- 나. 주택재개발사업 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- 다. 주택재건축사업 :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- 라. 도시환경정비사업 : 상업지역·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- 마. 주거환경관리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·정비·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- 바. 가로주택정비사업 :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
[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"산업단지개발사업"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- 가.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
- 나.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
- 다.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·정보처리시설·지원시설·전시시설·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
- 라.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·문화시설·의료복지시설·체육시설·교육시설·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
- 마.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
- 바. 도로·철도·항만·궤도·운하·유수지(溜水池) 및 저수지 건설사업
- 사. 전기·통신·가스·유류·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
- 아.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
-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11. "산업단지 재생사업"(이하 "재생사업"이라 한다)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·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제16조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.

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
제39조의18(재생사업의 총괄관리)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

[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7. "도시재생사업"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 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
 - 다.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·사회적·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
 - 라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 - 마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
 - 바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
 - 사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
 - 아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
 - 자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(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) 지정에 따른 사업
 - 차.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사업
 - 카.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26조(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)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- 1. 지방자치단체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
- 4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
- 5. 마을기업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

[주거기본법]

제5조(주거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(이하 "주거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주택·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
- 3.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
- 4.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6.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
- 7.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8.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
- 9.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]

제33조(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)
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토지등 소유자(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)
 2. 추진위원회
 3.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(이하 "시장정비사업법인"이라 한다)
 4. 시장·군수·구청장(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5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. 다만,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.

제41조(사업시행자 등)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.

[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(이하 "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[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조(사업시행자)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도시개발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정과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종근